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08-16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가. 본 조례는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위·수탁기관을 규정함으로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기하고
- 나. 송의운동장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이 건립되는 축구전용구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인천시민 프로축구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여가체육 활성화 및 시민프로축구단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지방공기업 및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위·수탁자를 정함(안 제25조제1항)
- 나. 송의운동장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되는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인천시민프로축구단에 위·수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 다. 시장은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준공검사 및 기부채납을 받아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지체없이 체결하도록 함(안 제25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9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시의회 문교사회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68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위탁관리)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 및 산하 등록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
3.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선수육성·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시민여가체육 활성화 및 지역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송의운동장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되는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인천시민프로축구단에 위·수탁할 수 있다.

⑤시장은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송의운동장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위·수탁협약을 지체 없이 체결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협약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⑦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⑧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u> 제25조(위탁관리)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u>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u> 제25조(위탁관리)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 및 산하 등록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 3.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선수육성·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시민여가체육 활성화 및 지역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송의운동장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되는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인천시민프로축구단에 위·수탁할 수 있다. ⑤시장은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송의운동장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축구전용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위·수탁협약을 지체 없이 체결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운영을 위한 위·수탁협약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⑦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⑧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